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3. 9. 14(목) 10:00

제245회 금천구의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(복지가족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
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07호
- 나. 제 출 자 : 이인식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## 2. 제안이유

장애인회관의 설치와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- 나. 장애인회관의 위치 및 시설 (안 제2조 및 제3조)
- 다. 장애인회관의 사용 (안 제4조 ~ 안 제7조)
- 라. 손해배상 및 운영위탁 (안 제9조 및 제10조)
- 마. 지도점검 및 사용허가 취소 (안 제11조 및 안 제12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및 제161조
  - 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 및 제6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기 타
  - 1) 입법예고: 2023. 9. 6. ~ 2023. 9. 12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장애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,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- 1) 장애인회관의 위치 및 시설 (안 제2조 및 제3조)
  - 시설의 주요 기능은 장애인단체의 사무공간 제공 및 회의실, 교육장 등의 사용을 규정함.
- 2) 장애인회관의 사용 (안 제4조 ~ 안 제7조)
  - 장애인회관 사용 기간과 대상 단체 등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단체의 회관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
- 3) 손해배상 및 운영위탁 (안 제9조 및 제10조)
  - 회관의 위탁에 관하여 근거 규정을 명시함
- 4) 지도점검 및 사용허가 취소 (안 제11조 및 안 제12조)

### 다. 검토의견

- 장애인회관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제1항에 따른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로,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을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장애인회관의 건립에 따른 재원 마련, 부지 설정 등 많은 과제가 발생되므로 사업 추진에 세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사료됨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**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**제161조(공공시설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### 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[시행 2022. 12. 22.] [법률 제18625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**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

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63조(단체의 보호·육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·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·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